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종전(2001년 2월 28일)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이후 우리도 주관으로 실시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부과대상으로 확인된 지역(월항지방산업단지)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 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어 월항지방산업단지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 결정하고자 함.

3.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(안)

시군명	구역	결정고시 면적(㎡)	면적(㎡)		비고
			기존고시	추가고시	
성주군	성주읍,가천면,초전면 각 일부지역 및 월항지방산업단지	8,774,062	8,696,000	78,062	**월항지방산업단지 (78,062㎡)**

4. 입법예고결과

○ **공고기간 : 2007. 4. 24 ~ 5. 13(20일간)**
○ **공고장소 : 군·읍면게시판, 군공보 및 군청홈페이지**
○ **공고결과 : 다른의견없음**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■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

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·광역시장 또는 시·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시장·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○ 성주군세조례 제84조
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○ 지방세법 제235조
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, 시장·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.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간주한다.

나. 참고자료(월항지방산업단지 현황)

○ 조성목적
석재산업육성개발 및 기술축적을 통한 석재산업발전 도모를 위해
조성된 민간개발 산업단지

○ 위　　치 : 월항면 유월리 일원

○ 조성면적 : 78,062㎡(유월리 931외 26필지)

○ 추진경위
- 1993.7.28 : 지역지정(경상북도고시 제1993-272호)
- 1994.10.8 : 실시계획 승인
- 1998.4.24 :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및 준공인가(경상북도고시 제1998-85호)
- 1998.6.30 : 단지준공

○ 업 체 수
- 입주업체 : 18개사
- 가동업체 : 13개사

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

□ 부과대상 추가지역

구　분	면　적(㎡)			비 고 (추가지역)
	기 정	**추 가**	변경후	
성 주 군	8,696,000	**78,062**	8,774,062	**월항지방 산업단지 (78,062㎡)**